

양승현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임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직무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이 이루어져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금융당국은 대상 임원 및 직무의 범위, 관리조치의 세부적 내용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바, 하위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함

-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3일부로 시행¹⁾을 앞두고 있음
 - 본건 개정 법률은 2023년 6월 발표된 금융감독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²⁾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임구조도’(Responsibility map)를 마련토록 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직무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하에서는 그 세부내용을 (i) 금융회사의 책임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ii)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iii) 제재 및 책임감면, (iv) 이사회내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순으로 살펴보기로 함
- 첫째, 금융회사의 대표이사³⁾는 책임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책임구조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직책을 배분한 문서를 말함

〈그림 1〉 책임구조도의 개념도



자료: 금융위원회

1) 법률 제19913호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6. 22),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3)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법 제30조의2 제2항 본문)를 말함

-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임원의 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포함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직원을 포함할 수 있음⁴⁾
 - 임원 범위에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한 취지는 지주회사 임원이나 외국금융회사 본사 임원이 자회사나 국내 지점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나 입법 과정에서 문언상 임원 범위를 명확하지 않아 임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⁵⁾된 바 있음
 - (책무) '책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⁶⁾되어 있으며, 책무구조도는 책무별로 담당 임원이 중복·공백·누락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함⁷⁾
 - 이와 같이 배분된 책무에 관해서는 담당 임원이 업무수행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된 업무에 대한 통제·관리 책임은 여전히 해당 임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격성 확인 및 공시등)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와 책무구조도 상 직책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원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고, 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⁸⁾
 - (제출) 마련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⁹⁾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¹⁰⁾
 -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 기재내용을 정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등의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사고 등 발생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은 책무구조도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음¹¹⁾
- 둘째, 금융회사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여야 함
- 기존에는 내부통제에 관한 법적 규율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개정 법률은 내부통제의 운영 및 준수 등 일련의 과정 전체를 규율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¹²⁾하고자 함

4) 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

5) 국회 정부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 17

6) 법 제30조의3 제1항

7) 한 명의 임원이 다수의 직책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회사 내 주요 책무가 아무에게도 배분되지 않거나(공백, 누락) 한 명 이상에게 중복하여 배분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0조의3 제2항)

8) 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2항

9)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이 거쳐야 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법 제30조의3 제3항)

10) 법 제30조의3 제6항

11) 국회 정부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 13~14

12) 국회 정부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 21

-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감독¹³⁾하는 반면, 책무구조도 상 임원은 소관 업무에 관해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함

〈표 1〉 임원 및 대표이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관리조치의 내용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법 제30조의2 제1항)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법 제30조의4 제1항)
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등의 적정성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의 효과적 집행·운영 여부 점검 3.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의 충실한 준수 여부 점검 4. 1.~3.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 사항 내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이상의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준수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 점검 3.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의 적시 파악을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적절한 수행 여부 점검 5.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점검 6.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관리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항 내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기타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금융회사의 임원은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관리조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함¹⁴⁾
 - 대표이사는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관리조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¹⁵⁾
- 셋째, 임원이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신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¹⁶⁾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 및 관리의무 부과 핵심은 임원제재에 있다기보다 임원 스스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제재는 위법행위 발생에 대한 결과책임이나 하급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니라 임원이 본연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자기책임이라고 보고 있음
 - 따라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서 ① 금융사고 발생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② (i)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의 책임을 묻는 상황을 미

13) 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14) 법 제30조의2 제2항

15) 법 제30조의4 제2항

16)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직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요구)를 말함(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제재가 가능함(법 제35조의2 제3항)

리 정하여 공개하며, (ii)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및 사고발생 시 관리의무 위반까지 다룰지 결정하는 '내부통제 책임규명 절차로의 이행 Trigger'를 설정하기로 함

• 개정 법률은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조치에 관한 일반 조항(법 제35조)과 별도 조항(법 제35조의2)을 신설해 법 제35조 제5항의 감독자책임 관련 규정¹⁷⁾을 적용 제외함

- 아울러 감경·면책 근거로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는 경우 (i) 임직원의 법령·내부통제기준 등 위반 행위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ii)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¹⁸⁾

• 이와 관련하여, 입법 단계에서 (i) 기존의 제재 및 제재 감경 기준¹⁹⁾과 차별점이 명확하지 않고, (ii) 문언상 제재감면 근거라기보다 재량 규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iii)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²⁰⁾된 바 있음

○ 끝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조치를 감독하게 함

• 내부통제에 관해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 권한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함임

- 이사회 내부통제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령 차원에서 설치되던 내부통제위원회(대표이사 및 관련 경영진으로 구성²¹⁾)를 법률 차원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여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함

•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함에 따라 향후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대표 역시 사외이사가 담당하게 됨

- 금융회사의 운영상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i)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²²⁾할 수 있고, (ii) 내부통제위원회 기능 일부를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²³⁾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개정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최초 제출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법 시행(2024년 7월 3일) 이후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²⁴⁾임

17) 법 제35조 제5항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8) 법 제35조의2 제2항

19)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3조 등

20) 국회 정무위원회(20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 27~30

21) 본건 개정 법률 시행 이전 법률에 따른 영 제19조 제2항

22) 법 제16조 제3항

23) 법 제22조의2 제3항

24) 부칙 〈법률 제19913호, 2024. 1. 2.〉 제6조 제3호 및 제4호

-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관련 규정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공시·보고에 관한 사항 역시 책무구조도 제출 후 최초로 선임(연임 포함)되거나 책무구조도 상 직책이 변경되는 임원부터 적용함
 - 반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부터 적용하며, 개정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역시 해당 시점까지 설치하여야 함
- 본건 법률 개정이 금융회사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영역 내에서 상시점검하며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함
- 다만, 개정 법률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범위와 관리조치의 세부적 내용, 보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제재 절차 개시 요건 및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내부통제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관계 정립²⁵⁾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임
 - 본건 법률 개정이 그 취지에 따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사료됨

25) 내부통제위원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가 되면, 준법감시인이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